

의안 번호	32
----------	----

2026. 7.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

의안 번호	32
----------	----

제출년월일 : 2026. 7. 21.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 이유

- 2023년 7월경 국토부에서 서마산IC 일원 교통량 분석 등을 검토한 결과 서마산IC 구조적 결함(교차로 상충, 엇갈림)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여 개선안 수립하였음
- 2024년 11월경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안에 대하여 국토부의 교통량 분석을 수행한 국토연구원과 수행사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설명함
- 2025년 8월경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업무 담당기관)에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에서 2025년 12월 우리 시에 사업 시행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음
- 협약(안)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에 대한 역할 분담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고속도로 개선는 국비, 접속구간의 개선은 시비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보고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사업 명: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 위 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서마산IC 일원)
- 사업 비: 81.1억 원[서마산IC 개선 54.8억(국비), 접속지점 개선 26.3억(시비)]
- 사업내용: 부산→서마산 송평로 직결램프 신설

3. 협약(안) 주요 내용

구 분	창원시	한국도로공사
역 할	보상, 국가유산 관련 업무 전반, 접속지점(부체도로 포함) 공사·관리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국가유산 제외), 고속도로 공사·관리
사업비	26.3억+α(접속도로 공사비 등)	54.8억+α(고속도로 공사비 등)

※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예상)

※ 본 협약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 사항일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창원시가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그간 주요 경과

- '23. 07. : [국토부·국토연구원]교통량 분석 수행(결과 : 개선 필요)
- '24. 11. : [국토부·국토연구원↔시장]개선(안) 설명
- '25. 08. : [한국도로공사]현장 조사(국토부 사업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
- '25. 12. : [우리시↔한국도로공사]사업시행 협약(안) 협의
- '26. 03. : [한국도로공사→우리시]용역 결과 일부 제공(설명 자료 작성 활용)
- '26. 06. : [우리시]사업 설명 자료 작성(교통 현황 분석 등)

5. 향후 추진계획

- '26. 07. : 시의회 보고
- '26. 08. : 협약(안) 보완 협의
- '26. 09. :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실시설계 등)
- '26. 10.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예산 외의 의무부담 대상여부)

6. 관련 규정

-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체결방법)

7. 협약(안)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고속국도 제102호 남해제1지선 서마산IC 개량공사 사업」을 위해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고속국도 제102호 남해제1지선 서마산IC 개량공사 사업(이하 “본 사업”)”은 남해제1지선 서마산IC에 연결로 기하구조 문제점(엇갈림 등) 개선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연결로 추가설치 및 기존 연결로 분리 등 서마산IC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② “연결로”는 고속국도 본선과 접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개량하는 도로를 말한다.
- ③ “접속도로”는 고속국도 연결로와 지역 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창원시에서 별도로 설치·개량하거나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 ④ “부체도로”는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 이용이 불가하여 지역 내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창원시에서 별도로 설치·개량하는 도로를 말한다.
- ⑤ “사업비”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를 말한다.
 1.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법정 경비 등 간접공사비로 구성되며, 공사 완료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공사 비용을 말한다.
 2. “보상비”는 용지보상비 등 직접보상비와 감정평가비, 지장물이설비 등 간접보상비로 구성된다.
 3. “부대비”는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비(자문, VE, 심의 등), 홍보비(착·준공식 등), 감리비,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감리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제3조 (사업내용)

- ①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협약을 이행한다.
 -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102호 남해제1지선 서마산IC 개량공사 사업
 - 2.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 * (붙임) 사업 노선도
 - 3. 범위 : IC 설계, 인허가, 보상, 공사, 유지관리 등
 - 4.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준공시까지(유지관리는 준공 이후까지 포함)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추진방식)

- ① 창원시는 본 사업의 보상업무, 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업무, 접속도로(부체도로 포함) 공사관리를 시행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제영향평가 포함), 인·허가 업무(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업무 제외), 연결로 공사관리[접속도로(부체도로 포함) 공사 제외]를 시행한다.
- ②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노선도(붙임)”와 같이, 연결로와 접속도로의 경계를 유지관리 경계로 결정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상호 합의하며, 준공과 동시에 각자 구간[접속도로(부체도로 포함)-창원시, 고속국도(연결로 포함)-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유지관리한다.
- ③ 연결로 추가설치 공사 완료 후 “사업 노선도(붙임)”와 같이 기존 연결로(내서방향 진출)의 유지 또는 폐쇄 여부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사업비의 확정)

- ① 사업비는 실시설계시 산출한 사업비를 기초로 준공 후 확정하며, 제12조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
- ② 실시설계 이후 지가·물가 변동, 낙찰 차액, 설계변경, 민원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한다.

제6조 (사업비 부담 및 관리)

- ① 사업비 중 “창원시”는 본 사업 관련 보상비(용지, 지장물 등), 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비, 접속도로(부체도로 포함) 공사비, “한국도로공사”는 설계비, 인허가(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 제외) 비용, 고속도로 연결로 공사비를 부담하여, 나머지 사업비는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 (인·허가 및 민원처리)

- ① 한국도로공사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허가 업무(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업무 제외)를 수행하며,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협약내용 이행에 따른 민원(신규 연결로 개설 및 변경, 기존 연결로 폐쇄, 접속도로 개선 및 교통 지정체 등)은 창원시에서 처리한다.
- ③ 실시설계, 보상, 건설공사 등 각 단계별로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은 해당 업무별 시행 주체가 주관하여 처리하며, 상호간 적극 협조한다.

제8조 (실시설계)

- ① 실시설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되, 창원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② 실시설계 확정 이후 관련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4조의 사업 추진방식과 제6조의 사업비 부담조건에 따라 각자의 책임분야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련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제9조 (보상업무)

- ① 간접보상, 지장물보상, 용지보상, 소유권 이전등기 등 보상업무 및 국가유산 업무 등 인허가 관련 조사업무는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 ②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국토교통부) 명의로 하며, 제14조에 의해 창원시가 유지관리하는 도로는 창원시 명의로 한다.
- ③ 창원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는 즉시 보상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보상 지연으로 인해 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공기 연장) 등 추가 비용은 창원시에서 부담한다.

제10조 (공사발주 및 공정관리)

- ①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발주 및 실착수 시기를 정부 지침에 따라 보상 업무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발주는 창원시에서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실공사는 창원시에서 최초 협의 보상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추어 착수한다.
단, 공사 발주 및 실착수 시기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정부 지침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②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한 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 계약금액 조정, 민원 처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 ③ 창원시는 접속도로(부체도로 포함)의 신설·개량이 필요시 본 사업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진행상황 통지)

- 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착공, 준공 등 사업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창원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소유권 및 유지관리)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발주 전까지 소유권 및 유지관리구간을 최종 확정하고, 준공과 동시에 각자 소관 구간에 대하여 이관 절차 이행과 유지관리(하자관리 포함) 책임을 진다.

제13조 (협약의 해석)

협약의 해석에 있어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상호간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 합의 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4조 (협약의 이행)

- ①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필요시 본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제·해지)

- ① 본 협약체결 이후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일방적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및 창원시 예산 외 의무 부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상대방의 협약내용 미이행으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미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사자들간에 본 협약을 지속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없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약은 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②항에 따라 협약내용 미이행으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에 대한 귀책이 있는 기관에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의 책임을 진다.
- ④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비용은 협약해제·해지시점까지 투입된 비용과 원상복구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물가변동 고려)를 포함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 (효력발생 시기)

- ① 본 협약은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서에 기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각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일

창 원 시
시 장 강 기 윤(인)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함 진 규(인)

